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
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
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
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제1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
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제25조제2호는 삭제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승인권자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각각 “승인권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부”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승인권자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승인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부 소속”을 “승인권자 소속”으로, “교육부장관이”를 “승인권자가”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을 “승인권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승인권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을 “승인권자는”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계측업자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변경 등록
5.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제5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총회 의사록)”을“(정관의 변경인가를 위한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부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한다.

제23조 중앙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는 “법 제54조”로 보며, 제3조제1항·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제5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을 “(지방소도읍의 지정신청)”에서 “(지방소도읍의 지정·고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고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항은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관계연구기관”을 “관계연구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할 시·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8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따라 시·도지사는”을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후단 중 “포함한다)는”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법 제162조제4항”을 “법 제162조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
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2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4조의2의 제목을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 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는”로 하고,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다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법 제11조를”을 “법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16조(「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제2호 라목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부담금 경감”을 “지방의회에 개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

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자율”을 “기본이자율”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등)”을 “(수입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귀속분은”은 “귀속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로, “작성·제출”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 수수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한다.

제18조(「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0조의6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포함한다”는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6항”을 “법 제61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교

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공유수면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구역 안의 공유수면

나. 「항만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구역 안의 공유수면

2. 제2항제1호 및 법 제4조제2항 각호를 제외한 공유수면은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각각 “관리청
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
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 전단 및 제6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
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
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의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 등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조합 등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 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27조(「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 허가

11. 삭제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합·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28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제29조(「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11조의11제2항 전단 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회원””을 ““회원”으로, “시·도지사”를 “산림청장”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산림청장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조합”을 “조합 등”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조합”을 “조합 등”으로 하고, 제2항제4호 중 “조합”을 “조합 등”으로 하고 “산림청장이”를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산림청장이”를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조합”을 “해당 조합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당해 조합”을 “해당 조합 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청장이”를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조합”을 “그 밖에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조합”을 “조합 등”으로 하며 “당해 조합”을 “해당 조합 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합”을 “조합 등”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0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산림청장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산림청장이”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산림청장의”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로 한다.

별표의 제1호 본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75	1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50	75	100
다.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50	75	1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50만원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5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법 제23조제1항제3호	200만원

지 않은 경우 라. <u>법 제10조제3항</u>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50만원

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1,000만원
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 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 된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 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500만원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 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3호	1,000만원
마.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 산인이 법 제11조제2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	500만원
바.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	1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u>주무부장관</u> 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①----- ----- <u>주무부장관</u>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생략)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이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 에 한정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	제25조(권한의 위임) ----- ----- -----

임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 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위임한다.	2.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생략) ② (생략)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u>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u>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승인권자가 정하는</u> ----- ----- ----- ----- ----- ----- ----- ----- ----- -----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u>법 제5조 제2항</u>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u>교육부장관</u> 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 ----- ----- ----- ----- ----- ----- <u>승인권자</u> ----- -----

<u>부장관이</u> 임명한다.	--- <u>승인권자가</u> -----.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u>교육부장관</u>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u>승인권자</u> 는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략)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서를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교육감</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교육부장관</u> 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 ----- ----- ----- <u>승인권자</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u>교육부장관</u> 은 제1항의 규정	② <u>승인권자</u> 는 -----

에 의하여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 ----- ---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 ----- ----- <u>승인권자</u> ----- ---
② <u>교육부장관</u> 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u>승인권자</u> 는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u>교육부장관</u> 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u>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u> 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삭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u>교육부장관이</u>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 ----- ----- ----- ----- --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권한의 위임) <u>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u>	<삭 제>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u>시정의 권고</u>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u>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u>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u>정원감축, 학급</u>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등기 등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 감독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생략)

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6.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7.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신 설>	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 · ② (생략)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u>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u> ① <u>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1.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계측업자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u>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u> <u>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1.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계측업자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1.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변경 등록 5.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u><삭 제></u>
--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u>행정안전부장관</u> 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u>행정안전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④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제5조(총회 의사록) <신설>	제5조(정관의 변경인가를 위한 의

(생략)	<u>견청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②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제21조(합병 지원) ① (생략)	제21조(합병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부나</u>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동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u> ----- ----- -----.
제23조(설립인가) 중앙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는 “ <u>법 제54조</u> ”로 본다.	제23조(설립인가) ----- ----- ----- ----- ---- “ <u>법 제54조</u> ”로 보며, 제3조제1항·제4항 중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은 “ <u>행정안전부장관</u> ”으-----.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청문에 한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 제>

<삭 제>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삭 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략)

<삭 제>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신청) 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 도읍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지방소도읍지정신청서에 대상지역의 경계가 표시된 5천 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 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고시) ①----- -----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광 역시장·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 도읍을 지정·고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8.(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 ----- -----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생략) ① (생략)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①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 1.~5.(현행과 같음) ②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육성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 ----- 관할 시장·군수----- -----. ④(현행과 같음)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 ----- ----- ----- ----- ----- ----- ----- -----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	②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 등록) ①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 ----- -----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폐관신고)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관신고)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 (생략)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	②----- ----- ----- ----- ----- ----- ----- 시·도지

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	<삭 제>

- 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
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
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
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
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
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
임장 각 1부
- ②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
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
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5조(시설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
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

<삭 제>

<삭 제>

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삭 제>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 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62조제5항-----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삭제>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③ (생략) ④ (생략)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u>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u> 8.·9. 삭제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 ----- ----- -----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 ----- ----- ----- ----- ----- ----- ----- -----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 <u>시·도지사</u> 또는 <u>대도시 시장</u>-----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 ----- ----- ----- ----- <u>시·도지사</u> 또는 <u>대도시 시장</u>-----.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설립등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의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인가 신청)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도지사</u>----- ----- -----.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 ----- ----- ----- ----- <u>시·도지사</u>----- -----.

제17조(권한의 위임) 법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상공회의소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의 인가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의 요구

<삭 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를 말한다. ④ (생략)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11조제2항----- ----- --.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

	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 징금의 부과 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 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② 시·도지사는 ----- ----- -----

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 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 ----- -----.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 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 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④ ----- ----- ----- ----- -----시·도지사에게-----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 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 ----- -----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2. (생략) ② (생략)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포함한다), 시·도지사 ---- ----- ----- ----- ----- ----- ----- -----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 ----- -----. 1. ~ 12. (현행과 같음)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군·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의3(경감 대상·기준 및 경감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감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부담금 경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을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부
담금 경감을 요청하려면 제1항
에 따라 정한 경감 기준 및 경
감 필요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경감 대상·기준 및 경감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

---- 지방의회에 개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의 회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6조의2에 해당 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6조의2에 따른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며,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 ----- ----- -----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 ② (생략)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③ ----- ----- ----- ----- -----.
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	1. -----

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 ----- 시장· 군수·구청장----- ----- -----
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 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2. ----- ----- ----- ----- 시장·군수·구 청장----- ----- -----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생략)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7. (생략)

②·③ (생략)

③ -----

----- 시장·군수·구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장·군수·구청장 -----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

1. -----

----- 시장·군수·구청장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생략)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④ 시장·군수·구청장-----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2. 시장·군수·구청장-----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	⑤ 시장·군수·구청장-----

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조정) ① (생략)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u>국토교통부장관</u> 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③ ----- <u>시장·군수·구청장</u> ----- ----- -----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부담금의 결정)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제18조(부담금의 결정) <u>시장·군수·구청장</u> ----- ----- ----- -----.
제19조(납부의 고지) <u>국토교통부장관</u> 이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납부의 고지) <u>시장·군수·구청장</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	③ ----- ----- -----

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u>이자율</u>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 ----- ----- ----- -- <u>기본이자율</u> ----- -----.
제21조(부담금의 추정) ① ~ ③ (생략)	제21조(부담금의 추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u> 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④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⑤ <u>국토교통부장관</u> 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	⑤ <u>시장·군수·구청장</u> 은 ----- ----- ----- ----- ----- ----- -----.

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u>시장·군수·구청장</u> 에 게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물납) ①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u>국토교통부장관</u> 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u>국토</u>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u>시장·</u>

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군수·구청장-----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④ (생략)	-----
제25조(결손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① -----
1.·2. (생략)	-----
② (생략)	-----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

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가의 산정

1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2.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부과(이 영 제15조·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통지,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

군수·구청장-----

제28조(수입 조치 등) ① <삭제>

담금의 재산정·조정 및 부과·환급

3. 법 제15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정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5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6. 법 제19조에 따른 납부 기일전 징수 및 고지

7. 법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8. 법 제21조에 따른 납부 독촉

9. 법 제22조에 따른 채납처분

10. 법 제23조에 따른 결손처분

11.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및 접수

1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에 관한 신고의

[illegible]

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국토교통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u>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 ----- ----- -----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 --- <u>시·도지사는</u>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22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필요한 사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u>시·도지사는</u> ----- ----- ----- ----- -----

항을 기록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생 략)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시·도지사</u> ----- -----.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 <u>시·도지사</u> ”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② ----- -- <u>시·도지사</u>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 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
1. 삭제	1. 삭제
2. <u>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처분 등 내용의 통지</u>	2. <u>삭제</u>
3. <u>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접수</u>	3. <u>삭제</u>
4. <u>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u>	4. <u>삭제</u>
5. <u>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u>	5. <u>삭제</u>
6. <u>법 제28조의2제3호에 따른 청문</u>	6. <u>삭제</u>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1. ~ 6.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u>시·도지사</u> 는 ----- ----- ----- ----- ----- -----.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법 제2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 는 ----- ----- -----

7.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7. 삭제
8.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8. 삭제
9.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징계	9.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징계
10.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0. 삭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u> 는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 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 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의 내용 및 그 횟수와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시·도지사는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 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 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 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 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 ----- ----- ----- ----- ----- ----- ----- 시·도지사----- -----.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법 제 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삭 제>
제2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등록신청의 접수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업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신고
의 접수는 제외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
동산개발업의 등록말소
6. 삭 제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조
사·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
의 관리 및 제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의 조사·검사 등
10.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11.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피
해분쟁조정의 요청
12.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13.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
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14.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사업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
에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등록
취소처분 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인정
15. 법 제27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자에 대한 폐업신고 전
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
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16.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공고
17.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삭 제
20. 삭 제
-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u>국토교통부장관이</u>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 -----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 ----- ----- -----.
④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u>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u>

입·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지사</u> -----)는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②·③ (생 략)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u>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u>시·도지사는</u>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신 설>	제○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부동

	<u>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u>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국제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 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 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생략)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②·③ (생략)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u>시·도지사</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8조(과징금의 용도) ①·② (생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과징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 ----- ----- ----- ----- -----.
1.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1. -----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 ----- -----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2. -----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 ----- -----
<신 설>	② 법 제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무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내항어선(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의 출입 신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출입 신고) ----- ----- ----- ----- ----- ----- ----- ----- ----- -----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할 것	1. ----- ----- ----- ----- ----- ----- ----- ----- ----- ----- -- <u>관리청에</u> ----- -----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2. ----- ----- ----- -----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할 것	----- ----- ----- ----- ----- ----- ----- <u>관리청에</u> ----- -----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할 것	3. ----- ----- ----- ----- ----- ----- ----- ----- <u>관리청에</u> ----- -----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할 것	4. ----- ----- ----- ----- ----- ----- ----- ----- ----- <u>관리청에</u> ----- -----

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2의2. -----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4조에	② <u>관리청</u> -----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	-----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	-----
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	-----	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	-----
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	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	-----	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u>해양수</u>	----- <u>관리청</u>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
<u>산부장관</u> 이 국가안전보장을	-----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
선박	--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
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	-----	선박은 제외한다.	-----.
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	-----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	-----	조제1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u>	----- <u>관리청</u> -----
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u>관</u> 이 지정·고시하는 정박구역	-----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	-----	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	-----
항하기 전에 <u>해양수산부장관</u> 에	----- <u>관리청</u> 에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
<u>계</u> 제출하여야 한다.	-----.	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하여야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한다.	-----.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u>해양</u>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u>관리</u>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법 제5조	② <u>관리청</u> -----
<u>수산부장관</u> 이 법 제4조제3항에	<u>청</u> -----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정	-----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	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	-----

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 ----- ----- --.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 ④ (생략)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u>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u>관리청</u> ----- ----- ----- ----- ----- ----- ----- ----- ----- ----- -----.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⑥ ----- ----- ----- -----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1. ----- ----- -----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 <u>관리청</u>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 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위촉한다.	③ ----- ----- ----- ----- ----- ----- ----- ----- <u>관리청</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0조제
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
의 처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
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
다.

1. ~ 4.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질

[illegible]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

③ 관리청

④ -----

⑤ -----
 -- 관리청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6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4. (생략)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위임한다.

1.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

-----위탁할 수 있다.

다.

<신 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의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등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조합등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u>관리청</u> ----- ----- ----- -----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u>관리청</u>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u>해양수산부장관</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u>관</u> <u>리청</u> 에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에서의 법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 8의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1. 삭제	제1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1. 삭제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합·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합·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삭 제>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변경신고 수리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합·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9.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

1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12.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수리

<u>서의 갱신</u> 13.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의 <u>징수</u> 14. 법 제56조제1항제2호, 제2호 <u>의3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u> <u>의 부과 및 징수</u>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u>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u> ② ~ ④ (생략) ⑤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u><삭제></u>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산림청장</u>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u>조합공동사업법인의</u>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 <u>회원</u> ”으로 본다.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u> ----- ----- ----- ----- ----- “ <u>회원</u> ”으로, “시·도지사”를 “ <u>산림청장</u> ”-----.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u>산림청장과</u> 금융위원회는 법 제12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u> ----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필요한 때에는 <u>조합</u>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 ----- <u>조합 등</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u>조합</u> 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 ----- ----- ----- ----- ----- ----- <u>조합 등</u> ----- -----.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u>조합</u> 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1. ----- <u>조합 등</u>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u>조합</u> 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 <u>조합 등</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②----- -----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u>조합</u> 의 경영에 관하여 <u>산립청장이</u> 정하는 사항	4. ----- <u>조합 등</u> -----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 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은 <u>산립청장이</u> 정 한다.	③----- ----- ----- <u>산립청장 또는</u> <u>시·도지사가</u> ----- ---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생 략)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현 행과 같음)
② <u>산립청장은</u>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 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 ----- -----.
③ <u>산립청장이</u>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u>당해 조</u> <u>합에</u>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 ----- ----- ----- <u>해당 조합 등</u> --- ----- -----.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u>산립청</u> <u>장은</u>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u>산립청</u> <u>장 또는 시·도지사는</u> ----- -----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u>당</u> <u>해 조합</u>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u>해</u> <u>당 조합 등</u> ----- -----.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 <u>산립</u> <u>청장이</u>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 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 외한 채무로 한다.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 <u>산립</u> <u>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u>조합</u> 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u>산립청장이</u> 인정하는 채무	3. <u>그 밖에 조합 등</u> ----- -----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 -----
② <u>산립청장은</u> 법 제12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u>조합</u> 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u>당해 조합</u> 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 다.	②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 <u>조합 등</u> ----- ----- ----- <u>해당 조합 등</u> --- ----- -----.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u>산립청장은</u> 법 제1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u>산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 ----- ----- ----- ----- -----

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
② <u>산림청장</u> 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u>산림청장</u> 또는 시·도지사는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조합</u>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 ----- <u>조합</u> 등-----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u>조합</u> 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4. ----- <u>조합</u> 등----- ----- -----
5. <u>조합</u> 이 국가의 용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u>조합</u> 등----- ----- ----- -----
③ <u>산림청장</u> 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③ <u>산림청장</u>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u>산림청장</u> (제28조에 따라 <u>산림청장</u> 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의 처리) ① <u>산림청장</u> 또는 시·도지사(제28조에 따라 <u>산림청장</u> 또는 시·도지사-----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① ~ ⑤ (생략)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u>산림청장이</u>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 ----- ----- -----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u>산림청장</u> 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u>시·도지사</u> 는 ----- ----- ----- ----- ----- ----- ----- -----.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① (생략)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u>산림청장</u>	② ----- ----- ----- ----- <u>시·도지</u>

이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u>사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u>산림청장이</u>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권한의 위탁) ----- ---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 가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u>산림청장</u> (제1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u>산림청장</u> 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 ----- -----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u>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325